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홍석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214

발의연월일: 2020. 7. 21.

발 의 자:홍석준·홍준표·정희용

박성중・추경호・이주환

임이자 · 김성원 · 서일준

김용판・조수진 의원

(119]

제안이유

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근 로자의 중소기업 취업지원 등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를 위한 다 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은 부동산업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. 현행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부동산업에는 부동산 임대 및 공급 업 이외에 감정평가업 등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도 포함되어 있음.

현행법이 부동산업을 지원대상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함에 따라 감정 평가업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전문 서비스업종도 고용창출 등을 위한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.

이에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경우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의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여 보다 다양한 일자 리의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을 위한 지원 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경우 중소기 업 인력지원 사업의 대상에 포함되도록 함(안 제3조 단서). 법률 제 호

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조 단서 중 "부동산업 등"을 "부동산업(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은 제외한다) 등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적용 범위) 이 법은 중소기	제3조(적용 범위)
업의 인력지원에 관하여 적용	
한다. 다만, <u>부동산업 등</u> 대통	<u>부동산업(부동산 관련</u>
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중소	서비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
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	<u>는 업종은 제외한다) 등</u>
니한다.	